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 등의 수출 관련 협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방위산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방위사업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사업(K-방산수출펀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윈스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한편,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신설하고, 우주영역인식 및 우주투사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우주기반체계사업팀을 신설하며, 항공엔진 및 첨단항공추진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신설하고, 무기체계 관련 국외업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하였던 방산부품개발팀과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폐지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협력총괄담당관·유럽협력담당관·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 및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총괄담당관·유럽협력담당관·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 및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수출 등 국제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지원, 관련 협의체 운영
2. 국외구매사업 협상 지원 및 국외업체와의 전반적 협력에 관한 업무
3.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국내외 업체간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4. 방산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제8조제4항제6호 중 “조사 및 신용도 평가”를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

7항제5호 중 “지정·해제 및 각군 군수품의 목록자료 일치화”를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형상(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절충교역과장”을 “방위산업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방산중소기업지원과·방산자원전략과·방위산업협력과·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업무
6.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7.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8.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 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9.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0.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2.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3.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4. 지역기반 방위산업 분야 기업 지원

5. 방위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6.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품류 지정 및 해제

7.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8. 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⑤ 방산자원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계획의 수립 및 공급망 관리

2. 방위산업물자의 지정·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3.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분석 및 현황 관리

5.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양도·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활

용에 관한 계획 수립

6. 산업통상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7.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8. 방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9.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10.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조정·통제 및 현황 관리

11.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

12.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감독

제10조의 제목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방기술보호국장”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방기술보호국에 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기술정책과장·기술혁신과장·기술보호과장 및 기술심사과장은”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기술도전과·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핵심기술개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이하 핵심기술 연구개발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핵심기술개발”을 각각 “핵심기술 연구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술 기획”을 “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과 신속시범사업은 제외한다.) 기획”으로 하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술도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이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2.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4. 신속시범사업(「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 수립·조정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신속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6.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국방기술과 신속시범사업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제1항 중 “기반전력사업총괄팀·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 및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기반전력사업총괄팀·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관급 장교로, 국

제협력사업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을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합정사업부에 합정총괄계약팀·호위합사업팀·한국형구축함사업팀·상륙함사업팀·고속기뢰전함사업팀·합동전력합정사업팀 및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둔다.

② 합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합사업팀장 및 상륙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합정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⑨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

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지상지휘통제체계”를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로 한다.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에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우주감시정찰사업팀·우주통신항법사업팀·우주기반체계사업팀·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을 둔다.

②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⑥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우주기반체계(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전력투사)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무인항공·지상무인·경계시스템”을 “무인항공·항공추진·지상무인·경계시스템”으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를 “제13조의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첨단기술사업단에 첨단기술총괄계약팀·무인기사업팀·과학화체계사업팀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둔다.

②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⑥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항공추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을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으

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을 “1명(6급 1명)”으로 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평가대상 조직)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399”를 “413”으로, 일반직 계 “398”을 “412”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 “16”을 “18”로,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0”을 “132”로,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4”를 “120”으로,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0”을 “7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02”를 “417”로, 일반직 계 “401”을 “416”으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 “16”을 “18”로,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4”를 “136”으로,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2”를

“118”로,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0”을 “75”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64”를 각각 “363”으로,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8”을 “57”로 한다.

별표 2의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64”를 각각 “363”으로,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8”을 “5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3”을 각각 “332”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9”를 “18”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4”를 “13”으로,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7”을 “85”로,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6”을 “113”으로,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

공주소보·시설주소보·전산주소보 또는 방송통신주소보 “53”을 “49”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5”를 각각 “334”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9”를 “1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를 “14”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0”을 “88”로, 행정주소·세무주소·관세주소·통계주소·공업주소·농업주소·해양수산주소·항공주소·시설주소·전산주소 또는 방송통신주소 “112”를 “109”로, 행정주소보·세무주소보·관세주소보·통계주소보·사서주소보·공업주소보·농업주소보·해양수산주소보·항공주소보·시설주소보·전산주소보 또는 방송통신주소보 “56”을 “52”로 한다.

별표 3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3”을 각각 “332”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8”을 “17”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4”를 “13”으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7”을 “85”로, 행정주소·세무주소·관세주소·통계주소·공업

주소·농업주소·해양수산주소·항공주소·시설주소·전산주소 또는 방송통신주소 “116”을 “113”으로, 행정주소보·세무주소보·관세주소보·통계주소보·사서주소보·공업주소보·농업주소보·해양수산주소보·항공주소보·시설주소보·전산주소보 또는 방송통신주소보 “53”을 “49”로 한다.

별표 3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5”를 각각 “334”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8”을 “17”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를 “14”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0”을 “88”로, 행정주소·세무주소·관세주소·통계주소·공업주소·농업주소·해양수산주소·항공주소·시설주소·전산주소 또는 방송통신주소 “112”를 “109”로, 행정주소보·세무주소보·관세주소보·통계주소보·사서주소보·공업주소보·농업주소보·해양수산주소보·항공주소보·시설주소보·전산주소보 또는 방송통신주소보 “56”을 “52”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국방부령 제11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115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118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 우주기반체계사업팀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상륙함사업팀장이,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이,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④이 규칙 시행으로 증

[별표 4의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5조의4 관련)

1. 방위사업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국제협력관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0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자원전략과	0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제협력관) ① (생략)	제5조(국제협력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협력관 밑에 <u>국제협력총괄담당관·유럽협력담당관·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 및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u> 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 <u>국제협력총괄담당관·유럽협력담당관·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 및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u> ----- ----- -----.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9. 삭제	
10. <u>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업무</u>	<삭제>
11. ~ 15. (생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u>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u>
	1. <u>국제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u>

	<u>공동수출 등 국제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지원, 관련 협의체 운영</u>	5. <u>표준화 대상 군수품의 품목 지정·해제 및 각군 군수품의 목록자료 일치화</u>	5. ----- <u>지정·해제</u>
	2. <u>국외구매사업 협상 지원 및 국외업체와의 전반적 협력에 관한 업무</u>	6. ~ 9. (생략) <u><신설></u>	6. ~ 9. (현행과 같음)
	3. <u>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국내외 업체간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지원</u>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생략)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현행과 같음)
	4. <u>방산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u>	② <u>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절충교역과·인증기획과·원가관리과 및 방산부품개발팀을 둔다.</u>	② <u>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방산중소기업지원과·방산자원전략과·방위산업협력과·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u>
	5. <u>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정</u>	③ <u>방산정책과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절충교역과장·인증기획과장 및 원가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방산부품개발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u>	③ <u>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 ③ (생략)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1. <u>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u>
④ <u>계약제도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④ -----.		2. <u>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3. <u>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u>
6. <u>국외 조달원 신용 조사 및 신용도 평가</u>	6. ----- <u>조사</u>		4. <u>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u>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⑦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u> <u>④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u> 2. <u>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u> 3. <u>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u>	5. <u>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업무</u> 6. 「<u>방위사업법</u>」 제43조에 따른 <u>보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u> 7. <u>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u> 8. <u>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u> 9. <u>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u> 10. <u>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u> 11. <u>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u>④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u> 2. <u>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u> 3. <u>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u>	<u>영에 관한 업무</u> 4. <u>방위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방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업무</u> 5. <u>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업무</u> 6. <u>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u> 7. <u>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양도·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u> 8. <u>방위산업물자의 지정·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u> 9. <u>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u> 10. <u>산업통상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u> 11. 「<u>방위사업법</u>」 제43조에 따른 <u>보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u> 12. <u>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분석 및 현황 관리</u> 13. <u>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u>	<u>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u> 4. <u>지역기반 방위산업 분야 기업 지원</u> 5. <u>방위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u> 6. <u>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품류 지정 및 해제</u> 7. <u>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u> 8. <u>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u>
---	---	---	--

용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14.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15.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감독 16.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7.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삭제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5.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6. 삭제 7.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7의2. 지역기반 방위산업 분야 기업 지원 8. 방위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9.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품류 지정 및 해제 10.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11. 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⑥ 철충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분석 및 현황 관리 5.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양도·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6. 산업통상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7.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8. 방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9.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10.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조정·통제 및 현황 관리 11.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 12.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감독 ⑥ 방위산업협력과장-----
--	--	--	---

1. ~ 8. (생략) ⑦·⑧ (생략) ⑨ 방산부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 부품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2. 부품국산화 사업의 조정·통제 및 현황 관리 3. 부품국산화 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에 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기술정책과장·기술혁신과장·기술보호과장 및 기술심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생략)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1. ~ 8.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기술도전과·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이하 핵심기술 연구개발이라 한다.)-----	리 및 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2. (생략) 3.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5. ~ 6. (생략) 7. 삭제 8.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⑤·⑥ (생략) <신설>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이하 핵심기술 연구개발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핵심기술 연구개발----- 4. 핵심기술 연구개발----- 5. ~ 6. (현행과 같음) 8. ----- ----- 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및 신속시범사업은 제외한다.) 기획----- ⑤·⑥ (현행과 같음) ⑤ 기술도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이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	--	--	---

[illegible]

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 ⑨ (생 략)

⑩ 국제협력사업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사업 기획 및 지원 업무

2.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협의체 운영

3. 국외구매사업 협상 지원 업무

제13조의3(합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합정사업부에 합정총괄계약팀·호위합사업팀·한국형구축합사업팀·상륙합사업팀·고속기뢰전합사업팀 및 합동전력합정사업팀을 두며, 합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합사업팀장 및 상륙합사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합사업팀장·고속기뢰전합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합정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의3(합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합정사업부에 합정총괄계약팀·호위합사업팀·한국형구축합사업팀·상륙합사업팀·고속기뢰전합사업팀·합동전력합정사업팀 및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합사업팀을 둔다.

장교로 보한다.

<신 설>

② ~ ⑦ (생 략)

<신 설>

② 합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합사업팀장 및 상륙합사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합사업팀장·고속기뢰전합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합정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합사업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⑨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합사업팀장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에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우주감시정찰사업팀·우주통신항법사업팀·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을 두며,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 설>

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에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우주감시정찰사업팀·우주통신항법사업팀·우주기반체계사업팀·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을 둔다.

②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 ④ (생략)

<신 설>

⑤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합동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우주기반체계(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전력투사)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⑦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

은 지상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 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 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⑧ (생 략)	팀장은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 ----- -----.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 직) ① 첨단기술사업단에 첨단 기술총괄계약팀·무인기사업팀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을 두며,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부이 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무인기사 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 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과학화체 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 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 설>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 직) ① 첨단기술사업단에 첨단 기술총괄계약팀·무인기사업팀 ·과학화체계사업팀 및 첨단항 공엔진개발사업팀을 둔다. ②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부 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 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무인기 사업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 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과학화체 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

	관급 장교로, 첨단항공엔진개발 사업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 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 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 무인항공·항공추진·지상무인 ·경계시스템-----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 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 은 항공추진 분야 방위력개선 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무 인항공·지상무인·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미 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의 기획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 (생 략) ⑤ (생 략) <신 설>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 ----- ----- -----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 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 ----- ----- -----

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③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 -----

-----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국방부령 제11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협력사업개발

-----.

----- 1명(6급 1명)-----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평가대상 조직)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국방부령 제11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삭제>

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협력사업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이 분장한다.	
국방부령 제115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제3조 (생략)	국방부령 제115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제3조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18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방산부품개발팀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방산부품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방산부품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이 분장한다.	국방부령 제118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제>
--	---

신·구정원대비표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제23
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99	413	+14
일반직 계	398	412	+1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	16	18	+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 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0	132	+2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 ·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 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4	120	+6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 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 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 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0	74	+4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02	417	+15
일반직 계	401	416	+15
서 기 관 · 과 학 기 술 서 기 관 또는 감사관	16	18	+2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 설 사 무 관 · 전 산 사 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4	136	+2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 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2	118	+6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 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0	75	+5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64</u>	<u>363</u>	-1
일반직 계	<u>364</u>	<u>363</u>	-1
·	·	·	
·	·	·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 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 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 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8</u>	<u>57</u>	-1
·	·	·	
·	·	·	

[별표 2의6]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제1항 단서 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 계	<u>364</u>	<u>363</u>	-1
일반직 계	<u>364</u>	<u>363</u>	-1
·	·	·	
·	·	·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 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 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 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8</u>	<u>57</u>	-1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43</u>	<u>332</u>	-11
일반직 계	<u>343</u>	<u>332</u>	-1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9</u>	<u>18</u>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 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4</u>	<u>13</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7</u>	<u>85</u>	-2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 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6</u>	<u>113</u>	-3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 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3</u>	<u>49</u>	-4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45</u>	<u>334</u>	-11
일반직 계	<u>345</u>	<u>334</u>	-1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9</u>	<u>18</u>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 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5</u>	<u>14</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90</u>	<u>88</u>	-2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 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2</u>	<u>109</u>	-3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 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6</u>	<u>52</u>	-4
·	·	·	
·	·	·	

[별표 3의3]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제3항 본문 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계	<u>343</u>	<u>332</u>	-11
일반직 계	<u>343</u>	<u>332</u>	-1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8</u>	<u>17</u>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 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4</u>	<u>13</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7</u>	<u>85</u>	-2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 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6</u>	<u>113</u>	-3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 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3</u>	<u>49</u>	-4
·	·	·	
·	·	·	

[별표 3의4]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제3항 단서 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계	<u>345</u>	<u>334</u>	-11
일반직 계	<u>345</u>	<u>334</u>	-1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8</u>	<u>17</u>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 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5</u>	<u>14</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90</u>	<u>88</u>	-2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 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2</u>	<u>109</u>	-3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 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6</u>	<u>52</u>	-4
·	·	·	
·	·	·	